

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94	제 출 자	거 창 군 수
----------	---------	-------	---------

1. 제안 이유

거창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연서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「지방자치법」 취지에 맞게 완화함(안 제2조)

-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‘200명 이상’에서 ‘190명 이상’으로 개정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: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

※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‘17. 7. 26~8. 16.

(나) 예고결과: 해당사항 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개정현황

완료(11): 밀양, 사천, 거제, 고성, 남해, 산청, 의령, 함양, 합천, 통영, 하동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200명”을 “190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<u>200명</u> 이상이어야 한다.</p>	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----- ----- ----- -----<u>190명</u> -----</p>